|  |  |  |
| --- | --- | --- |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정법 [2011] 158호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  안전생산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전생산의 법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국무원의 기업안전생산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국발[2010] 23호)등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이《안전생산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를 제정하여 인쇄발부 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해주길 바란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2011년 10월 14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제1조** 안전생산의 불법,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전생산의 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국무원의 기업안전생산 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국발[2010] 23호)등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탄광안전감찰기구(이하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가 법률에 따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불법행위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법률에 따라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책임을 갖는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의 행위에 종사하거나, 행정허가가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계속 생산경영 건설활동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위법행위는 생산경영단위 및 그 종업인원이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정, 강제성이 있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법률에 따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조사처리와 지도를 적절히 결부시키고, 처벌과 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또한 생산경영단위에게 법률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정 허가수속을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합법적으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도록 한다.  **제4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정과 강제성이 있는 표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부를 책임지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가진다. 국민개인은 자신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연도별 안전감독관리감찰 법률집행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규칙에서 규정한 직책, 절차와 요구에 따라 신고된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안전감독관리감찰부분에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인이 사실을 고의로 조작 또는 왜곡하거나, 무고한 타인을 모함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건전한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인의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인의 신분 또는 신고자료를 누설하거나 신고인의 상황을 피신고단위, 피신고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고에 공헌한 인원에 대해서는 유관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8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수리여부를 회답할 수 있으며, 즉시 회답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단, 신고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기타 연락방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부문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고일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반드시 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처리권한이 있는 단위에 반영하거나, 처리권한이 있는 단위에 이송하고 실명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이미 수리한 신고에 대해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실명신고의 경우, 즉시 심사를 조직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신고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충 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  (2) 익명신고일 경우, 신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단위, 안전생산의 불법, 위법사실, 연락방식 등의 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심사를 조직한다.  (3) 조사를 거친 신고사항이 조사와 일치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4) 조사를 거친 신고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밝히며, 법률에 따라 피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심사 시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본급 인민정부조직 유관부문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신고인의 처리상황에 대해 처리를 종료할 경우, 종료와 동시에 실명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단, 신고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기타 연락방식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성한 보통, 대(大),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설립 구역의 시급이상 인민정부 안전위원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처리 현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유관 인민정부 안전위원회 사무실(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구체적인 관리사항을 책임진다.  관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현지 주요 신문매체 또는 본 단위 인터넷 상에 관리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관리 사항에 대한 가이드, 협조와 감독을 강화하고, 즉시 안전생산 불법, 위법사고 조사처리의 진행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필요 시, 업무팀을 파견하여 현장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관 단위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제11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시, 법률에 따라 아래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안전생산이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비,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압류 또는 차압하며, 압류, 차압을 결정한 일로부터 15일 내에 법률에 따라 결정을 처리한다.  (2) 법을 위반하고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는 위험 화학품의 장소,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하는 위험 화학품 및 화학품 원재료, 설비를 압류한다.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시,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본급 인민정부 조직의 유관부문과의 공동 조사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유관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유관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기타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유관단위와 책임인에 대해《안전생산 행정처벌 자유재량 적용규칙》,《안전생산 행정처벌 자유재량표준》또는《탄광 안전감찰행정처벌 자유재량 실시표준》의 확정을 기준으로 각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제13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일 벌금액수의 3%를 추가로 납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압류, 차압한 시설, 설비, 기자재의 경매 소득은 벌금으로 납부한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4조**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 및 관련인원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발생지의 조사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생산경영단위의 등록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에 조사처리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5조**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가 조사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행정처벌을 결정한 경우, 생산경영 단위의 등록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조사처리에 책임을 갖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본 방법 제13조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 및 관련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할 경우, 안전생산 허가증, 안전자격증을 가압류, 취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발생지역의 조사처리 책임이 있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자격증의 가압류, 취소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자격증을 교부 관리하는 안전감독관리관찰부문에 이송하여 조사처리 한다. 이송받은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분은 이송 받은 행정처벌 건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출부문에 판결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감독감찰 중,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불법, 위법 행위가 발견 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분문건의 발급관리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법률에 따라 영업집조,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2) 영업집조가 이미 말소등기 또는 취소등기가 되었거나, 영업집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신규 등기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속하여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독단적으로 계속하여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4) 심사비준한 등기의 경영범위,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의 심사비준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생산경영 건설 행위  **제17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법에 듸거하여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하는 것을 거절, 방해하거나,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조성할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공안기관에 이송하고《중화인민공과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안전감독관리감찰본부는 조사처리 종결일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안전생산 불법행위의 조사처리 상황을 현지 관련 매체 또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의 웹사이트 상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안전생산 불법, 위법 사고 조사처리 상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관리조치와 처벌사항 전부를 실행한 후에 관리를 종료한다. 관리 종료일로부터 10일 업무일 내에 현지 주요 매체와 본 단위의 웹사이트 상에 공고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19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기록과 조사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불법, 위법행위로 인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생산안전 사고를 조성하거나 1년 내 2번 이상의 비교적 큰 생산사고를 조성하고, 이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중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성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유관 업종 주관부문과 협력하여 사회에 공고하고, 투자부문, 국토자원부문, 건설부문, 은행부문, 증권부문 등 주관부문에 통보하여 1년 간 해당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용지 심사비준, 증권융자, 은행여신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제20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업무일 내에, 행정처벌 결정서 및 유관 증빙 자료를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감찰부문이 기타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방법》제67조,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21조**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가 일반인신고, 상부(上級)관리, 일상조사에 발견한 관할구역 내의 불법생산기업(단위)에 대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처리를 진행하지 않아 불법생산기업(단위)가 존속하는 경우,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 및 관련 책임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기율 처분을 내린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의 관리구역에 불법 탄광이 있을 경우,《국무원의 탄광 생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규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任免)기관이 유관법률, 행정법규와 기율처분 규정에 따라 간부관리 권한 내에서 처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 업무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법률, 법규, 규정과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면(任免)기관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처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安全监管总局关于印发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查处**  **办法的通知**  安监总政法〔2011〕158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安全生产监督管理局，各省级煤矿安全监察机构：  为了严厉打击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维护安全生产法治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企业安全生产工作的通知》（国发〔2010〕23号）等法律、行政法规和规定，国家安全监管总局制定了《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查处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国家安全监管总局　　　　　　　　　　　　　　　　　　　　　 二〇一一年十月十四日    **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查处办法**    **第一条**　为了严厉打击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维护安全生产法治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企业安全生产工作的通知》（国发〔2010〕23号）等法律、行政法规和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煤矿安全监察机构（以下统称安全监管监察部门）依法查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安全生产非法行为，是指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依法取得安全监管监察部门负责的行政许可，擅自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或者行政许可已经失效，继续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  本办法所称安全生产违法行为，是指生产经营单位及其从业人员违反安全生产法律、法规、规章、强制性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  **第三条**　安全监管监察部门依法查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实行查处与引导相结合、处罚与教育相结合的原则，督促引导生产经营单位依法办理相应行政许可手续，合法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  **第四条**　任何单位和个人从事生产经营活动，不得违反安全生产法律、法规、规章和强制性标准的规定。  生产经营单位主要负责人对本单位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并对本单位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承担法律责任；公民个人对自已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承担法律责任。  **第五条**　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制订并实施年度安全监管监察执法工作计划，依照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职责、程序和要求，对发现和被举报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予以查处。  **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安全监管监察部门举报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举报人故意捏造或者歪曲事实、诬告或者陷害他人的，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七条**　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建立健全举报制度，对举报人的有关情况予以保密，不得泄露举报人身份或者将举报材料、举报人情况透露给被举报单位、被举报人；对举报有功人员，应当按照有关规定给予奖励。  **第八条**　安全监管监察部门接到举报后，能够当场答复是否受理的，应当当场答复；不能当场答复的，应当自收到举报之日起15个工作日内书面告知举报人是否受理。但举报人的姓名（名称）、住址或者其他联系方式不清的除外。  对于不属于本部门受理范围的举报，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告知举报人向有处理权的单位反映，或者将举报材料移送有处理权的单位，并书面告知实名举报人。  **第九条**　对已经受理的举报，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依照下列规定处理：  （一）对实名举报的，立即组织核查。安全监管监察部门认为举报内容不清的，可以请举报人补充情况；  （二）对匿名举报的，根据举报具体情况决定是否进行核查。有具体的单位、安全生产非法违法事实、联系方式等线索的，立即组织核实；  （三）举报事项经核查属查的，依法予以处理；  （四）举报事项经核查不属实的，以适当方式在一定范围内予以澄清，并依法保护被举报人的合法权益。  安全监管监察部门核查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确有困难的，可以提请本级人民政府组织有关部门共同核查。  安全监管监察部门对举报的处理情况，应当在办结的同时书面答复实名举报人，但举报人的姓名（名称）、住址或者其他联系方式不清的除外。  **第十条**　对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造成的一般、较大、重大生产安全事故，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安委会应当按照规定对事故查处情况实施挂牌督办，有关人民政府安委会办公室（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具体承担督办事项。  负责督办的人民政府安委会办公室应当在当地主要新闻媒体或者本单位网站上公开督办信息，接受社会监督。  负责督办的人民政府安委会办公室应当加强对督办事项的指导、协调和监督，及时掌握安全生产非法违法事故查处的进展情况；必要时，应当派出工作组进行现场督办，并对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查处中存在的问题责令有关单位予以纠正。  **第十一条**　安全监管监察部门查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有权依法采取下列行政强制措施：  （一）对有根据认为不符合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在用设施、设备、器材，予以查封或者扣押，并应当在作出查封、扣押决定之日起15日内依法作出处理决定；  （二）查封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危险化学品的场所，扣押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运输的危险化学品以及用于违法生产、使用、运输危险化学品的原材料、设备；  （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行政强制措施。  安全监管监察部门查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时，可以会同有关部门实施联合执法，必要时可以提请本级人民政府组织有关部门共同查处。  **第十二条**　安全监管监察部门查处安全生产非法行为，对有关单位和责任人，应当依照相关法律、法规、规章规定的上限予以处罚。  安全监管监察部门查处其他安全生产违法行为，对有关单位和责任人，应当依照《安全生产行政处罚自由裁量适用规则》、《安全生产行政处罚自由裁量标准》或者《煤矿安全监察行政处罚自由裁量实施标准》确定的处罚种类和幅度进行处罚。  **第十三条**　当事人逾期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安全监管监察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3%加处罚款；  （二）根据法律规定，将查封、扣押的设施、设备、器材拍卖所得价款抵缴罚款；  （三）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四条**　对跨区域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生产经营单位及其相关人员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应当依法给予重大行政处罚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发生地负责查处的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书面邀请生产经营单位注册地有关安全监管监察部门参与查处。  **第十五条**　对跨区域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生产经营单位不履行负责查处的安全监管监察部门作出的行政处罚决定的，生产经营单位注册地有关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配合负责查处的安全监管监察部门采取本办法第十三条规定的措施。  对跨区域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生产经营单位及其相关人员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应当给予暂扣或者吊销安全生产许可证、安全资格证处罚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发生地负责查处的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提出暂扣或者吊销安全生产许可证、安全资格证的建议，并移送负责安全生产许可证、安全资格证颁发管理的安全监管监察部门调查处理，接受移送的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接受移送的安全监管监察部门对前述行政处罚建议有异议的，应当报请共同的上级安全监管监察部门作出裁决。  **第十六条**　安全监管监察部门在安全生产监管监察中，发现不属于职责范围的下列非法违法行为的，应当移送工商行政管理部门、其他负责相关许可证或者批准文件的颁发管理部门处理：  （一）未依法取得营业执照、其他相关许可证或者批准文件，擅自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  （二）已经办理注销登记或者被吊销营业执照，以及营业执照有效期届满后未按照规定重新办理登记手续，擅自继续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  （三）其他相关许可证或者批准文件有效期届满后，擅自继续从事生产经营建设活动的行为；  （四）超出核准登记经营范围、其他相关许可证或者批准文件核准范围的违法生产经营建设行为。  **第十七条**　拒绝、阻碍安全监管监察部门依法查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移送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八条**　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将安全生产非法行为的查处情况，自查处结案之日起15个工作日内在当地有关媒体或者安全监管监察部门网站上予以公开，接受社会监督。  对安全生产非法违法事故查处情况实施挂牌督办的有关人民政府安委会办公室，应当在督办有关措施和处罚事项全部落实后解除督办，并在解除督办之日起10个工作日内在当地主要媒体和本单位网站上予以公告，接受社会监督。  **第十九条**　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建立完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记录和查询系统，记载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及其处理结果。  生产经营单位因非法违法行为造成重大、特别重大生产安全事故或者一年内发生2次以上较大生产安全责任事故并负主要责任，以及存在重大隐患整改不力的，省级安全监管监察部门应当会同有关行业主管部门向社会公告，并向投资、国土资源、建设、银行、证券等主管部门通报，作为一年内严格限制其新增的项目核准、用地审批、证券融资、银行贷款等的重要参考依据。  **第二十条**　安全监管监察部门查处安全生产非法行为，应当在作出行政处罚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将行政处罚决定书及相关证据材料报上一级安全监管监察部门备案。  安全生产监管监察部门查处其他安全生产违法行为，应当依照《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第六十四条的规定，将行政处罚决定书报上一级安全监管监察部门备案。  **第二十一条**　县（市、区）、乡（镇）人民政府对群众举报、上级督办、日常检查发现的所辖区域的非法生产企业（单位）没有采取有效措施予以查处，致使非法生产企业（单位）存在的，对县（市、区）、乡（镇）人民政府主要领导以及相关责任人，依照国家有关规定予以纪律处分；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县（市、区）、乡（镇）人民政府所辖区域存在非法煤矿的，依据《国务院关于预防煤矿生产安全事故的特别规定》的有关规定予以处理。  **第二十二条**　国家机关工作人员参与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纪律处分规定由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按照干部管理权限予以处理；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三条**　安全监管监察部门工作人员对发现或者接到举报的安全生产非法违法行为，未依照有关法律、法规、规章和本办法规定予以查处的，由任免机关按照干部管理权限予以处理；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1年12月1日起施行。 |